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

- 02 민생5법 요약 표
- 03 학자금문제해결법(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
- 08 중소기업살리기법(SSM규제 유통법·상생법 개정)
- 15 친환경무상급식법(학교급식법 개정)
- 19 서민금융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 23 서민주거안정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개정)

【6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 5법】

분야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상임위	쪽수
학자금 문제 해결법 -취업후상환제도 대폭 개선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등록금넷·참여연 대 청원안 안민석 의원안 등	교과위	3
중소상인살리기 -SSM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법사위	8
	상생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법 -행복하고안전한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등 다수	교과위	15
서민금융보호법 -폭리예방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정무위	19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법사위	
서민주거안정법 -무주택서민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등 다수	법사위	23
	임대주택법 개정안	김성순 의원안 (주거·시민단체의 의견 반영됨)	국토 해양위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1

2010년 2학기부터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시급!

- 취업 후 상환제(ICL) 특별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대학생·학부모들의 살인적 고통과 부담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국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2010년 2월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수입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는(현재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 당장 피할 수 있게 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현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1학년 1학기 경우), B학점 이상의 성적(1학년 2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이자의 이자까지 내는 방식)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점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등록금넷¹은 애초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왔음.

-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음.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고작 예상치의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 신청했음. 정부 당국은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고, 대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

1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약자로 학생, 학부모, 교수, 교사, 시민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공동 활동 기구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오고 있음.

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음.

-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게 되어 '홍보'가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작 취업 후 상환제 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아주 늦게 제출한 것은 교과부였고, 그것도 문제투성이 법안이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인 대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빌린 시점부터 이자를 내야 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 것임. 학생들의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살인적인 부담은 여전하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원금의 2.3배 이상이나 내야 하는 '고금리+복리'방식의 제도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임. 교과부 시뮬레이션에도 8학기동안 총 3천 2백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연봉 1천9백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25년간 무려 3배가 넘는 9천7백5만원의 비용을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제 곧 대학에서는 2학기 등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취업 후 상환제를 대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함.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좋은' 제도, '친서민' 제도라는 이야길 듣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함.

2. 개정안 주요 골자

1) 대출자격 기준 개선

- 현행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은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고시되었음(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9호). 그리고 신용등급에 의한 제한은 없으나 한국장학재단은 만 35세 이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음.

-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

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데에 있음.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대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에 대학생의 학점, 성적 석차, 연령, 신용등급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장학금이 아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연령 및 신용등급'을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은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서 당연히 삭제해야 함.

2) 학자금 대출 금리

- 현행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대출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5.7%로 고시되었음(위 고시 제 2010-9호).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대출 원리금은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등록금 대출 잔액에 대출 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는 등록금 대출 잔액에 대출 금리를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대에서 4%대까지가 수두룩하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5.2%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음.(아래 주요정책금리표 참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출연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따라서 대출 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인 채권 발행 금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므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그 채권의 수익률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고채의 이자율과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임. 국고채는 주로 3년물이 발행되고 있고, 국고채 3년물의 2010. 1월말 유통수익율은 4.27%임. 따라서 대출금리도 이와 같이 매 학기 시작 전 6개월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율에 연동하여, 그 이하로 결정함이 적절할 것임.

- 그리고 상환 개시 이후 대출 금리를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원 조달 비용을 초과하여 국가가 수익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상환 개시 이후에도 대출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도록 함.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출 금리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단

일하게 5.7%로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위 고시 제2010-9호), 기존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 지원을 받아오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가 더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됨. 따라서 거치기간 동안에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임.

<표>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

사업명	융자조건	금리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피보험자였던자	3.00%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피보험자 등	1-1.5%
공무원학자금대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무이자
저소득가구전세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2.0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지원	4.50%
군인학자금대부	대학에 재학 중인 군인 본인 및 그 자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3.40%
실직자정 생활안정자금대부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 미만인자에게 생계비 지원	2.40%
교직원학자금대여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무이자
산재근로자및자녀대 학학자금융자지원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및 그 자녀	1-3%
도서벽지전기공급 비용일부용자	도서벽지 지역주민	무이자
창업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3.61%
소상공인 지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3.98%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집을 사는 데 이자도 5.2%를 적용하고 있음)	5.2%
중소기업대출 지원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	1.25%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출	본인·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4%
시장 상인회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시장 상인회에 대부 (상인들이 실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부시는 3% 이자)	무이자
소매업 지원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 금리	4.22%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등의 2009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지원	연1.25%~ 4.2%

공기업 직원 지원	공기업 직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지원(2010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고 함), 공기업 직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또는 1~2%대 금리 지원	무이자 등
-----------	--	----------

* 주요 정책금리는 무이자나 3~4%대임을 알 수 있음. 각별한 공공영역인 등록금 관련 금리를 위 정책금리보다 한참 높은 5.7%로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임.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참여연대·등록금넷의 개정안, 김호석 의원 개정안, 안민석 의원 개정안, 최재성 의원 개정안 등 다수의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부연 설명 : 6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신청자격기준이나 대출이율 등에 교과부가 고시 등을 변경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부당국은 국회의 입법조치와는 별개로 대학생·학부모들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 대학생들이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안민석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도 제출돼 있어, 이 법안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꼭 제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2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위해 SSM규제 시급!
-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 대형마트에 이은 재벌슈퍼(SSM : 슈퍼슈퍼마켓의 약자로, 보통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함)의 무분별한 입점으로(현재 대형마트는 400여개가 넘게, SSM은 700여개가 넘게 출점해 있고, SSM의 경우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예정)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중소기업들과 지역경제의 몰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입점으로 인근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이 30.8% 감소했으며, 현재의 경영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상인들이 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 출점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의 평균 매출액이 47.6% 감소하고, 고객 수는 5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및 관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08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9.3조원이 줄어들었음. 이와 같이 재벌유통회사들은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고스란히 빨아들여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부의 역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단시간에 붕괴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실제로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5월 자영업자 수는 570만 9천명으로 2008년 5월에 비해 38만 3천명이 감소함. 이 중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29만 5천명이 감소함. 이는 중소기업자 전체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자들의 대량 폐업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사회적 제동을 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그 핵심은 SSM에 대한 규제이며,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시급히 개정해야 함. 지난해 언론사 및 국회의원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결과, 국민들도 70%가 넘게 SSM에 대한 규제와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 국가가 즉시 해야 할 일은 전국 중소기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 골자

- 애초에 중소기업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안,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제출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1) SSM에 대해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유통법 개정안) 2) 중소기업자들이 대기업의 상권 확장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상생법 개정안)이었음.

-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실상의 반대로 위 법안들의 내용이 국회 지경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됐음. 전국에 400여개의 대형마트, 700여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생존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만 골몰한 채 중소기업인들의 SSM에 대한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 것임. 결국 지난 4월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책을 담은 법 개정이 무산되고, 실효성이 부족한 조항만 통과되는 것에 그치고야 말았음.

- 그나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이 포함되는 것으로 상생법 개정안이 지경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그전에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방식의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내려 홈플러스 등이 가맹점 방식으로 SSM을 개점하는 데 날개를 달아주었고 이에 중소기업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음), 원래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당국의 사업조정 시 품목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화한 조항 등이 모두 빠진 것은 큰 문제임.

- 중소기업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외쳤던 유통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39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 SSM을 포함한 모든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예 조항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무척이나 부족하다 할 것임. 그런데, △그나마 이 규정도 3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인데다 △절대다수의 유통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전면적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이 모두 빠졌고 △그동안 지경부가 말해왔던 SSM 등록제도 지금처럼 신고제로 유지되는 등 누가보기에다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통과된 것임.

- 전통시장 주변에 최대 500미터 이내로 SSM에 대한 규제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1)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고, 2)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반경 500미터 이외의 요소요소에 대형마트와 SSM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고사하고야 말 것이라는 추정이 손쉽게 가능하며, 3) 그나마 500미터 조항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음. 4월 국회, 5월 국회에서도 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그 SSM 규제 법안마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임. 여야 및 정부의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적극적인 반대와 여당의 태도돌변으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임. 당초 SSM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수위를 대폭 줄여 여야 및 정부의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외교통상부가 반대하는 점만을 근거로 들어, 사실상 쪽정이 법안인 유통법만 통과시키자고 입장을 돌변한 것임.

- 더욱이 SSM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두 법안의 통합처리를 요청한 바 있고, 중소기업청 또한 두 법안 모두 시급히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어느 나라 국회가 통상 기술자의 주장에 휘둘러, 자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 주무 부처까지 합의 처리한 법률을 뒤엎을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 일각,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조차 국내외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함을 역설해 왔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역시 공고히 형성돼 있음에도,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조차 일부 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러 입법을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으며, 국회는 즉각 6월 임시국회에서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SSM규제 관련 두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임. 더욱이 외통부가 반대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입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내용을 명시화하는 수준이어서 반대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음.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뿐임.

-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바와 같이 사업조정제도의 입법 취지를 보았을 때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함이 분명함에도 그동안 이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조차 법사위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가맹점 SSM은 이미 이 법의 목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SSM법안은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조건으로 유통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화된 등록제조차 후퇴해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만 규제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SSM에 대한 문제가 워낙 시급해 실효성이 한참 떨어지는 이번 법안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묵인하였던 것임.

- 사실상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상인들은 지금과 다를 바 없이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돼 생존권 투쟁을 이어나가야 함. 한나라당과 외통부는 마치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으로 인해 큰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지경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현재 SSM이 들어오려고 하는 곳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 내에 해당 하는 것은 30% 수준임.

- 다만 중소상인들은 두 법이 같이 통과돼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형마트 및 SSM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도 계속해 보겠다는 절박함으로 두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것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적 상술을 중단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함.

-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SSM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6월 14일 대정부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지경위)를 통과한 SSM법안을 어떻게 정부가 법사위에서 붙들어 계류시켰냐”고 질책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재리시장의 분노가 넘쳐흐르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금 EU와의 FTA가 걱정이 되서 정부일각에서 SSM통과를 지연,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나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 함. 따라서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SSM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추후 SSM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

한 개설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함.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국회 지경위 통과 유통법 개정안 대안, 상생법 개정안 대안
- 소관 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 관련 부연 설명 : 일단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규제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 참조에 붙여놓은 중소기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원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참조

<1> 중소기업살리기전국네트워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안 주요 골자

1. 규제대상 범위 확대

규모면에서 대규모점포에 미치지지는 않지만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보다는 골목 구석구석 개설되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기업 슈퍼마켓도 당연히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 그러나 대기업 슈퍼마켓이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점포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대기업 슈퍼마켓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프랜차이즈 형식의 점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개설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대규모점포 등'으로 통칭해야 한다.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현재와 같이, 등록만으로 점포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 점포의 개설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록제는 사실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제'에 불과하여 개설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허가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등록제에 비해 점포 개설 제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용도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규율 도입

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지역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규율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관한 규율에도 이러한 용도지역별 분류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설이 허용되는 점포의 면적을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음에도, 그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서 그 용도지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면, 허가제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특정 용도지역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지의 변경,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시간,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는 점포 개설자의 이익과 점포 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4. 기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영업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의 주변생활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년 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다면, 등록 대규모점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 개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

<표> 현재까지 파악된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민·형사 피소 내용

지역	구 분	비 고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형사상 업무방해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응호(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장) - 이상 벌금 300만원 한부영(갈산대책위대표,상인) 홍기욱(갈산대책위총무,상인) - 이상 벌금 100만원
	민사상	삼성테스코 : 1억4천만여원
	손해배상	가맹점 : 2천2백만원

인천 부개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형사상 업무방해	정재식(대형마트 인천대책위 사무국장) 김응호, 연국흠(부개대책위 대표, 상인) 이준현(부개대책위 회원, 상인) - 이상 벌금 30만원
	민사상 손해배상	삼성테스코 : 1억6천만여원
인천 송현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형사상 업무방해	6인 : 경찰조사
	민사상 손해배상	1300만원 손배예정
서울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형사상 업무방해 및 집시법위반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신현광(대방동 대책위 대표, 상인) 송재영(민주노동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 김종철(진보신당 대변인) 박성민(민주노동당 동작구위원회 사무국장)
서울 구의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형사상 업무방해	4인-경찰출두 요구서가 옴
서울시 지하도상가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 상 손해배상	서울시의 일방적인 점포계약 해지 시도에 항의하던 지하도상가 상인 대표들에게 서울시 및 오세훈 시장은 2009년 3월 지하도상가 상인대표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목으로 형사고소 함. 나아가 2009년 4월에는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에게 각 3천만원(모두,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제기. 중간에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음.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3

친환경·직영·무상급식 전원실시 부탁드립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제 중의 하나로,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음.(5월말, SBS-중앙일보 조사) 실제 선거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전원 실시를 공약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음.

- 국민들이 바라는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직영급식이 동시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부터,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할 것임. (먼저 초등학교 전원 실시,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 확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오세훈, 김문수 당선자 등은 소득 하위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여당의 저소득층 선별급식 방침은 1)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차급식이 될 수밖에 정책임. 2) 또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3) 또한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음. 이런 점들에 비추어봤을 때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원 실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법과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와 신빈곤의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2009년 9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고,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 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음.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급식비 연체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에서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무려 541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음.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절반 수준만 복원되는 데 그침.

- 2008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1조2385억 원(28.3%), 지자체 1703억 원(3.9%), 학부모 2조9312억 원(67%), 기타 351억 원으로 구성돼 있음. 아래 <표> 서울시의 2008년 국공립 학교회계결산 자료를 참고하면,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학교급식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 급식이 교육 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감안한다면, 급식비의 70%가까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셈임.

<표> 2008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 원,%)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 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 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자료 : 서울시교육청, 김춘진 의원실.

-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배우는 학생들이 굶는 일만큼은 없어야 함. 우선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그 근거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빨리 전체 학생들이 차별과 상처, 그리고 위화감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교육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일부 경감되는 확실한 효과까지 발생하게 될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학교급식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부담을 명문화(김춘진 의원안 등)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학교급식 중앙위원회의 설치(권영길 의원안 등)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음.

3) 의무교육인 경우는 무상교육 명문화(권영길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등)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4)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안정성 제고 및 친환경 식재로 사용 강조(권영길 의원안, 김세연 의원안 등)

-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위탁급식에서 발생하였음),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 또 학교급식에는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정부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친환경 및 안전성을 강조.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강기갑 의원안 등 다수
- 관련 상임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조 : 관련 법안 현황 표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9. 9. 29.	김춘진(민)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2	2009. 7. 16.	김선동(한)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 및 방중 교육활동 중 학교급식 제공
3	2009. 6. 30.	김정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조항 신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식재료비 등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4	2009. 4. 23.	권영길(노)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예외적 위탁규정 삭제 및 직영전환 의무화, 광우병위험 수입산쇠고기 및 관련제품 사용금지
5	2009. 3. 20.	이한성(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과부령으로 별도 지정
6	2009. 3. 4.	김세연(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 공동구매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국가경비 지원
7	2008. 7. 18.	강기갑(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조작 식재료 및 광우병위험 수입산 쇠고기 사용 금지 및 별칙조항 추가
8	2008. 7. 3.	전병헌(민)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관련 제품 사용금지,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 광우병위험 모든 부위 사용금지 및 처벌조항 강화
9	2008. 7. 1.	이철우(한)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식재료 사용금지, 처벌조항 강화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4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 법 개정 취지

<현 대부업체들의 폭리 실태>

- 현재 대부업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엔캐시와 산와머니만 살펴봐도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음.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업계 1위인 러시엔캐시는 2009회계연도에 이자수익이 4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순이익은 1194억원으로 20%나 늘었음. 러시엔캐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1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 이 회사의 작년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도 1조350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 급증했음.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지난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두 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부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소액 신용대출에 이자상한선인 연 49%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러시엔캐시는 자산(대출)의 42%(5724억원)가 자기자본이며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12% 정도의 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산와머니도 2008년 말 자산총계 5938억원 중 48%인 2876억원이 자기자본이며 외부자금은 일본 현지에서 연 10% 미만 금리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재 대한민국은 '폭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출 관련 금리만큼은 각종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엄청난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음. 2002년경 외환위기 당시 신중한 검토 없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의 부활 요구가 거세어지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이자제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를 차단하고 대부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계의 숙원사업

이었던 사채업 양성화의 호기로 삼았음.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법상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9%임)

-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미봉책으로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이자율의 제한

- 현행 대부업법은 연리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리 49%를 최고금리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법 시행당시 정하였던 연리 66%에서 단 한번 인하한 금리임. 최근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서 우리나라 대부업만이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로는 유일무이하게 서민들을 상대로 한 엄청난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왜 우리 서민들은 일본 국민들보다 2~3배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가. 대부업체에게 인정된 특혜금리는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임. 이는 원칙적으로 조속히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하마. 다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고 금리 40% 범위 내에서 시행령 상으로는 30%까지 인하시키는 것이 꼭 필요함.

2) 대부업 감독체계의 개선

- 대부업법 시행이후 등록대부업체는 1만7천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 등록대부업체보다 약 2배 정도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 대부업 감독에 배치할 인력도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한 수만 개에 이르는 등록·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대부업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기관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추후 금융소비자 전반을 총괄할 기구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그 기구에서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여야 함.

3) 불법채권추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 불법채권추심이 대부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수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왔고, 2009년에는 드디어 시민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실체적인 법규정은 일부 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일면 정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불법채권추심이 실증적으로 감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단속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인하

- 오랫동안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시행령으로 25%로 정해왔다가, 지난 구제금융 사태 때 IMF의 강권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후 다시 부활하면서 시행령으로 금리가 30%까지 보장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당연히 대부업법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30%(장기적으로는 25%), 시행령에는 20% 정도로 최고금리를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할 것임.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이정희 의원안, 박병석 의원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 관련 상임위 : 이자제한법(법사위), 대부업법(정무위)

-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부연 설명 :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 중 이정희 의원안은 최고금리를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박병석 의원안은 최고금리를 연 49%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인데, 이를 절충하여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시행령은 단기적으로는 30%가 적당할 것임. 이와 연동해 사회 전반의 이자를 관할하는 이자제한법의 경우는 법상 최고금리는 30%로 하고(박병석 의원 발의안)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최고금리를 운용하는 게(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으로 20%로 제한할 것을 주장) 바람직할 것임. 즉, 일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본법 30%, 실제 시행령에서는 20%로, 대부업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은 대부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금전대차보다는 높은 본법 40%, 시행령은 30%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일단은 타당할 것임.
- 또 고승덕 의원, 이정희 의원 안의 경우처럼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 제한을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폐해를 근절해나가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조 : 관련 법안 현황 표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8. 11. 20.	이정희(노)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2009. 2. 13.	김영우(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3자 명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대부업자가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2009. 4. 2.	이상민(선)	대부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하도록 함
4	2009. 4. 22.	박병석(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연 49%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1.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2009. 5. 20.	고승덕(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 등록을 제한.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해 초과분의 3배 내에서 과징금 부과.
6	2009. 6. 2.	윤영(한)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미등록대부업자 및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자 처벌 강화
7	2009. 6. 29. (이상 대부업법 개정안)	이정희(노)	대부업 광고시 광고업자가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 무등록대부업자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자율인 연6%. 대부업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8	2009. 4. 17.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율의 범위에 연체이자율을 포함. 최고이자율 위반하거나 연체이자율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처벌 규정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5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대란 예방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

1. 법 개정 취지

-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셋값 폭등을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2009년의 경우 전세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동, 강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많게는 1억까지 전셋값이 뛰었기 때문이고, 그런 현상은 매년 또는 2-3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음.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이 심각해지자 2009년 8월 23일 정부당국이, 전세자금 대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전역에서의 과속·동시다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과 그로 인한 이주수요의 폭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었음.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또 보호기간인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최장 보호기간인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5% 초과해서 상승시킬 수 없게 돼 있음) 임차료 상승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 전·월셋값 폭증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

-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법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과 함께,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또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근거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분산돼,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됨) △그 4년 동안에는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함. △또 우리나라의 학제가 3년제, 6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비효율적인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 한편,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지난 해 9월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들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들이 기존의 전세값보다 60% 넘게 더 주고 이사를 가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동시다발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값싼 전셋집’의 품귀와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임. <한겨레>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 세입자 158가구의 주거 변화 양상을 추적했더니, 전셋값은 이주 전 평균 4353만원에서 이주 후 평균 7176만원으로 63% 폭등한 것으로 집계된 것임. 또 세입자들은 대부분 값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했지만, 원하는 지역에 빈집(성동구 내 32채)이 거의 없어 대부분 입주를 포기했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동시다발 대규모 주택 멸실 정책의 수정, 임대주택의 풍부한 공급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임.

- 또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주거 취약층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이 빈약한 것은 큰 문제임. 장기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적정 재고 수준(20% 안팎)에 턱없이 못 미침.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설정을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 놓아 실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 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음. 이는 서민 주거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조치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임대주택법 개정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주거 상실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 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골자

1) 주택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하여 주택 임대차 등록 제도를 정비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음. 또 주민등록 및 임대차 등록을 마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되 일방에 의한 임대차 등록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위 등록 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상황과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 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하여 전세 값의 무리한 폭등을 막을 수 있게 하였음.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임. 시군구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며, 위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은 공정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조정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음.

3)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최장 4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차임 상한선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보장하였음. 임차인에게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뒀음.

4)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 등(임대주택법 개정안)

- 앞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득이 부족하여 임대주택에서 주거약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 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음. 이는 서민 주거 약자들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한 조치라 할 것임.

5) 임차인대표자회의 결성 의무화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의무화(임대주택법 개정안)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임차인대표자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실제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결성되지 않거나 결성 됐다 해도 임대사업자들이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 이용섭 의원안(주임법 개정안), 김성순 의원안(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토해양위(임대주택법 개정안)

※ 참조 : 관련 법안 현황 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8. 7. 10.	최규식(민)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	2008. 7. 29.	박순자(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의 하한을 보증금의 3분의 1로 정함.
3	2008. 11. 19.	박종희(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 양도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2009. 2. 3.	박영선(민)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5	2009. 3. 5.	김재균(민)	예외적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6	2009. 9. 7.	이용섭(민)	임대차기간 4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등의 상환을 제한.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619

발 간 일 | 2010. 06. 19 (총 27쪽)

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